

2022년 1분기 노사협의회 협의사항

안 건	협 의 사 항
<p>1. 특정업체 편중계약 및 수의계약 제도개선 변경 요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2.1.13. 부서장 회의 사장 훈시사항 ‘관내 업체 계약 확대 및 특정 업체 편중계약 금지’ 및 ‘관내업체 우선계약 확대 및 특정 업체 편중 근절 요청’ 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내용의 주요 내용은 수의계약 시 동일 업체와 4회 이상 계약을 제한으로 인하여 ○ 사업장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, 합리적인 제도개선 변경을 요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정업체 편중계약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 제도(방침)의 취지인 동일업체 4회 이상 계약 제한은 유지하되, 1년 정도 사업 경과를 지켜본 후 향후 이 제도가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더 좋은 제도가 발굴되면 점차적으로 제도개선 및 홍보 추진

안 건	협 의 사 항
<p>2. 대면접촉 사업장 안전 위생용품 구입 및 자가진단키트 배부조건 변경 요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용객과 직접 대면 강습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착용하는 방수 마스크를 개인 사비를 통한 방역용품 구입 보다는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해당 직원들에게 배부하고, ○ 자가진단 검사키트의 경우도 구입부터 배부까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긴급을 요하는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팀별로 관리 토록 절차 간소화 요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원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스포츠 센터 운영상 방수마스크에 대한 복리 후생비 지출이 가능하며, 구입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판단 ○ 업무시간에 부서 내 확진자 발생 시 각 사업장별로 보유한 자가진단키트를 선 지급하는 대신에, ○ 좀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대상자(밀접접촉자)는 우선적으로 전문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※ 업무 중에는 병원 신속항원검사 시 공가 사용 가능

안 건	협 의 사 항
<p>3. 사내근로 복지기금 도입 대책방안 요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1년 2/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요청 드렸던 사내근 로 복지기금 도입 요청에 따 른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 드리며, ○ 2022년 사내근로 복지기금 도 입을 위해 향후 일정과 계획 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요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우리 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공사 설립 취지 (김해시 적자해소)와 당위성(출자자 배당), 재정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시기상 다소 무리 ○ 향후 여건이 충족되었을 때 노사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도입을 위해 협의 추진